

이 보도자료는 2019. 3. 8. 12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범기

전화 02-3219-4323 / 팩스 02-3219-4222

보도자료

2019. 3. 6.(수)

자료문의 : 증권범죄합수단

전화: 02-3219-2302

팩스: 02-3219-2401

주책임자: 단장 박광배

제 목 P2P 대출업체 A사 투자금 편취 등 사건 수사결과

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박광배)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P2P 대출업체 A사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,

○ 피고인들은 A사를 운영하거나 A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,

① 2015. 11.~ 2018. 1. 대출상품의 담보를 확보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 6,802명을 속여 합계 1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,

② 2016. 11.~ 2017. 8. 대출 목적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연체 중인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에 돌려막기로 사용하여 73억 원을 횡령하고,

③ 2017. 10. 담보로 설정된 A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등을 확인하여,

- 2019. 2. 19. A사 대표 1명 및 차주 2명을 구속 기소하고 A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○ 2019. 3. 현재 투자자들이 반환받지 못한 연체 금액은 총 253억 원(본건 범행으로 인한 92억 원 포함)임

-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A사 계좌 등을 동결 조치 하였고,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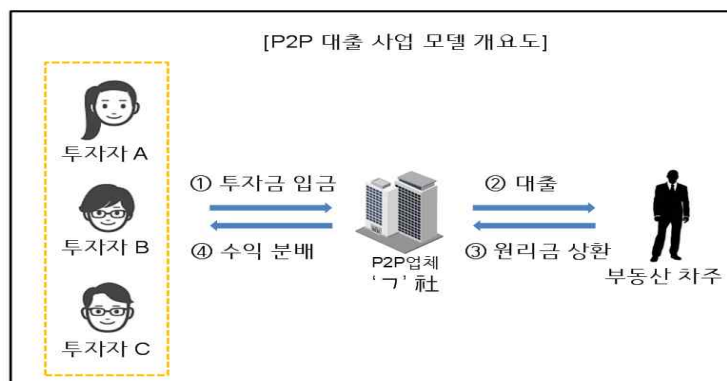
① 피고인

- A○○ [33세, ㄱ社 대표이사, 구속]
- B○○ [33세, ㄱ社 영업본부장, 불구속]
- C○○ [51세, 차주,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, 구속]
- D○○ [50세, 차주, 대부업체 운영자, 구속] [별첨] 피고인별 처분내용 참조

② 공소사실 요지

- 2015. 11.~2018. 1. 사실은 ① 담보를 확보할 의사가 없거나, 확보가 불가능함에도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, ② 대출할 의사 없이 허위 대출 상품을 게시하고, ③ 차주가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 하였던 것처럼 상환 이력을 허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 6,802명을 속여 합계 162억 원의 투자금 편취 【사기】
- 2016. 11.~2017. 8. 대출 목적으로 모집한 투자금 73억 원에 대한 대출이 취소되어 해당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연체 중인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에 돌려막기로 사용 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(횡령), 업무상횡령】
- 2017. 10. 담보로 설정한 ㄱ社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힘 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(배임)】

※ P2P 대출이란, 인터넷 플랫폼 운영업자가 특정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와 연결하여 주고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 사업모델임



2

주요 수사 경과

- 2018. 8. 금융감독원 통보
- 2018. 8.~12. 계좌추적 및 관련자료 분석(결제대행사 내 가상계좌 포함)
- 2019. 1. 압수수색, 관련자 조사
- 2019. 1. 31. 피고인 A○○, C○○, D○○ 구속
- 2019. 2. 19. 피고인 A○○, B○○, C○○, D○○ 기소

3

수사 결과

① 폭넓은 계좌추적 통한 다양한 편취 범행 확인

- 투자금 관리에 사용된 가상계좌에 대한 폭넓은 계좌추적을 통해 ① 무담보 대출임에도 담보가 있는 것처럼 게시한 유형, ② 전액 대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많은 금액을 투자받은 후 ㄱ사와 차주가 나누어 사용한 유형, ③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상환구조가 있는 것처럼 게시한 유형 등 다양한 편취 유형을 확인함

[별첨2] 유형별 예시 참조

② 정보가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

- ㄱ사는 대부분 소액투자자인 P2P 이용자들이 ㄱ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이외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실 상품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범행하였음
- 그 결과 2019. 3. 현재 투자자들이 반환받지 못한 연체 금액은 총 253억 원 (본건 범행으로 인한 92억 원 포함)임

③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의 외형 부풀리기

- ㄱ사 대표 A○○은 다수의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, 연체 발생시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2017. 11. 기준 누적대출액 805억 원으로 P2P 대출업계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음

- ㄱ社は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의 외형을 꾸준히 키워나가 2017. 11.경 상장회사에 현금 110억 원에 매각되었음

※ 2018. 10. 위 상장회사는 ㄱ社の 부실을 이유로 위 계약을 파기


4 차주와의 공생관계 형성

- ㄱ社は 2016. 2.경 시행업자인 C〇〇와의 사이에 '부동산 P2P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(MOU)'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PF 상품을 취급함
- C〇〇은 위 MOU에 따라 ㄱ社에 시행업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후 그들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취득하고, ㄱ社は 위 시행업자들을 위한 부동산 PF 상품을 게시, 대출하면서 시행업자들로부터 플랫폼 수수료를 취득하여 서로 공생 관계를 형성함
- ㄱ社와 C〇〇는 C〇〇이 직접 차용하는 상품에 관하여는 게시 내용과 달리 무담보 대출을 해주거나,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편의를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함께 하였음

※ 플랫폼 수수료 :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게시하는 대가로 차주로부터 수수하는 비용

4

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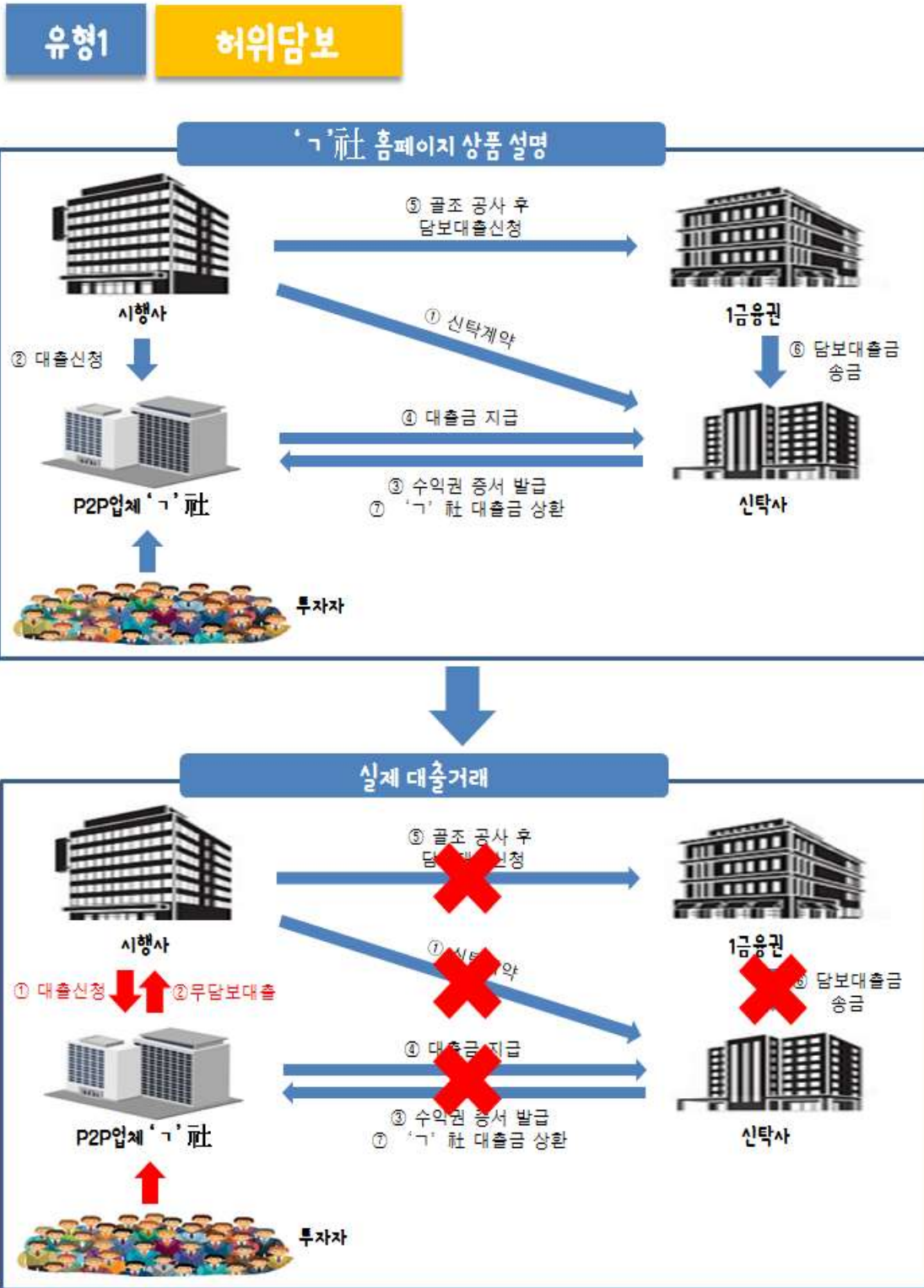
-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다수 서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P2P 대출 등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음 

[별첨1]

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 (나이)	신분	공소사실 요지[죄명]	처분
1	A○○ (33세)	ㄱ社 대표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B○○, C○○과 공모하여 2016. 8.경부터 2017. 2.경까지 허위 담보 등을 게시한 2개의 상품으로 합계 50억 원의 투자금 편취 [사기] · D○○와 공모하여 2015. 11.경부터 2017. 2.경까지 허위 담보 등을 게시한 상품으로 합계 74억 원의 투자금 편취 [사기] · B○○와 공모하여 2017. 4.경부터 2018. 1.경까지 허위 상품 4개를 게시하여 합계 14억 원의 투자금 편취 [사기] · 2017. 5.경 허위의 상환이력을 게시하여 합계 24억 원의 투자금 편취 [사기] · 2016. 9.경부터 2017. 8.경까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5개 상품의 투자금 73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 사용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, 업무상횡령] · 2017. 10.경 C○○과 공모하여 대출금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임의 말소하여 ㄱ社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, C○○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	구속 기소
2	B○○ (33세)	ㄱ社 영업본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A○○, C○○과 공모하여 2016. 8.경부터 2017. 2.경까지 허위 담보 등을 게시한 2개의 상품으로 합계 50억 원의 투자금 편취 [사기] · A○○과 공모하여 2017. 4.경부터 2018. 1.경까지 허위 상품 4개를 게시하여 합계 14억 원의 투자금 편취 [사기] 	불구속 기소
3	C○○ (51세)	차주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A○○, B○○와 공모하여 2016. 8.경부터 2017. 2.경까지 허위 담보 등을 게시한 2개의 상품으로 합계 50억 원의 투자금 편취 [사기] · 2017. 10.경 A○○과 공모하여 대출금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임의 말소하여 ㄱ社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,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	구속 기소
4	D○○ (50세)	대부업체 운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A○○과 공모하여 2015. 11.경부터 2017. 2.경까지 허위 담보 등을 게시한 상품으로 합계 74억 원의 투자금 편취 [사기] 	구속 기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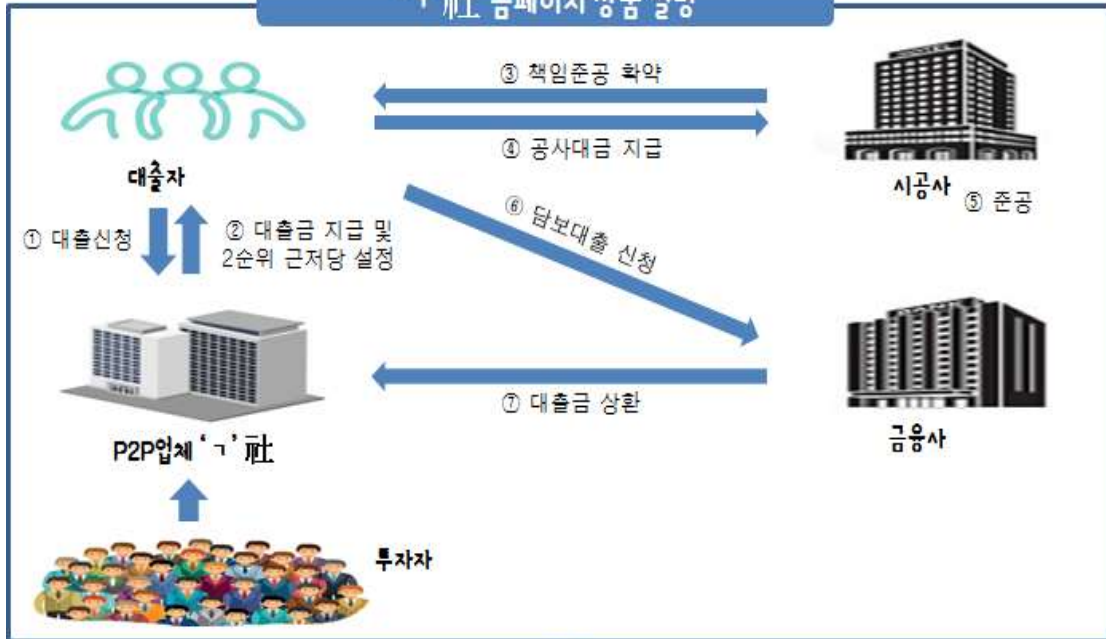
[별첨2]



유형2

나눠쓰기

'기'社 홈페이지 상품 설명



실제 대출 거래



유형3

허위구조

